

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, 제116조 의거 [과태료 부과 사전통지(의견진술 및 자진납부)]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‘폐문부재’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28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



- 건 명: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- 근 거: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6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 부과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끝수학학원	716-90-*****	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72번길 (이하 생략)	김**	5,000,000원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

4. 공고기간: 2026. 8. 28. ~ 2026. 9. 11.(15일간)

5. 납부 등 문의: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노동기준조사3과(담당: 정상훈, 031-850-7656)